

■ 공인결석

○ 대상 :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

○ 공인 결석 인정

▷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: 결혼, 사망, 출산 등

▷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

가. 사고 및 응급으로 인한 치료(진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, 치아질환, 피부질환,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 제외) : 1일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

나. 입원치료 : 4주 미만(진단서)

다.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: 7일(공휴일포함)

▷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, 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: 해당기간

▷ 졸업시점이 6개월 미만 남은 재학생의 취·창업

▷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등(수업시수의 최대 1/2까지만 인정함)

▶ 신청경로 : 학사인트라넷 → 성적 및 강의평가 → 공인결석 신청 및 조회

▶ 신청방법 :



▶ 승인처리 : 담당 부서에서 사유 및 증빙 확인 후 최종 승인처리

(해당 요건 미충족 및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미신청 시 승인불가)